

17년도 사회복지포럼

“시대적 흐름에 따른 아동복지생활시설의 발전방향”

- 일시 : 2017. 4. 14(금) 오후 2~4시
- 장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층



프로그램

사회 : 장진용 부연구위원

시 간	구 분	담 당
14:00-14:05	개회 안내	사회자
14:05-14:10	인사말씀	서상목 회장(한국사회복지협의회)
14:10-14:20	격려사	유주헌 과장(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 이상근 회장(한국아동복지협회)
14:20-14:50	발제	노충래 교수(이화여대)
14:50-15:40	토론	좌장 : 김형모 교수(경기대)
15:40-16:00	종합토의	좌장 진행
16:00	폐회	사회자

목차

[발제문]

- 시대적 흐름에 따른 아동복지 생활시설의 발전방향 5
노충래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토론문]

- 아동복지 생활시설의 발전방향 39
이경은 교수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시대적 흐름에 따른 아동복지 생활시설의 발전방향 49
김홍기 원장 (경북기독교보육원)
- 아동복지 생활시설의 위기와 기회 55
한경희 (경기도아동복지협회장)

시대적 흐름에 따른 아동복지 생활시설의 발전방향

노총래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시대적 흐름에 따른 아동복지 생활시설의 발전방향

2017. 4. 14.

Contents

- I. 들어가며
- II. 이론적 배경
- III. 2012 연구결과 요약
- IV. 특성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국내외 사례
- V.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개편방안

I. 들어가며

1. 아동복지법의 변화

-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 다양한 아동복지사업 수행 가능
- **2016년 아동복지법 개정:**
 - 원가정 복귀, 지자체의 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 아동의 권리 강화(최상의 이익)
 -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 조사
 - 보호아동 양육상황 점검; 아동 개별보호 및 관리 계획 수립
 - 보호자 참여 및 아동의 의사 존중
 - 친권상실 청구권; 학대아동 피해쉼터 운영
 - 퇴소아동의 사후관리
 - 보호비용의 징수 가능성

2. 외부환경의 급속한 변화

- 출산율 저하로 아동 수 감소-> **요보호 아동의 감소**
- 요보호 아동 발생 유형은 미혼모, 부모의 학대, 부모의 이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서울 및 경기도에 집중되는 영아 유기현상은 서울 지역에 과부하 현상 유발
- 아동학대로 인한 시설 내 **일시 보호의 기능**이 뚜렷해짐
- 학대아동 및 문제행동을 가진 아동의 증가
- 시설보호보다는 가정보호 우선정책
(국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가족친화적 정책 권고)

3.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혼재된 평가 및 지원

- 시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 고비용 (시설기능보강, 많은 시설종사자 인력 수 등)
- 아동의 발달성과 (시설에서의 아동이 일정선을 넘어서면 더 잘함
아동이 입소 직후에는 공동생활가정이나 일반위탁아동에 비해 심각한
문제를 겪음)
- 지속적인 아동학대 및 집단시설의 폐해에 따른 부정적 시각
-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양육기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
- 외부 전문인력예의 의존 (예: 임상심리사)
- 지자체별 아동지원의 차별성, 예산부족 및 아동복지의 몰이해

☞ 1990년대부터 시설의 변화 필요성과 다기능화가 제시되었으나,
다양한 요인으로 **지지부진한 상태**

☞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는 아동양육시설의 변화를 위한 기회

☞ 아동복지시설들의 기능전환 및 다기능화 방안 모색 필요성

Ⅲ 포럼의 주제발표 목적

1.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유연한 변화
2. 아동양육시설의 전문성 향상
3. 아동양육시설, 특히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전환을 위한 방향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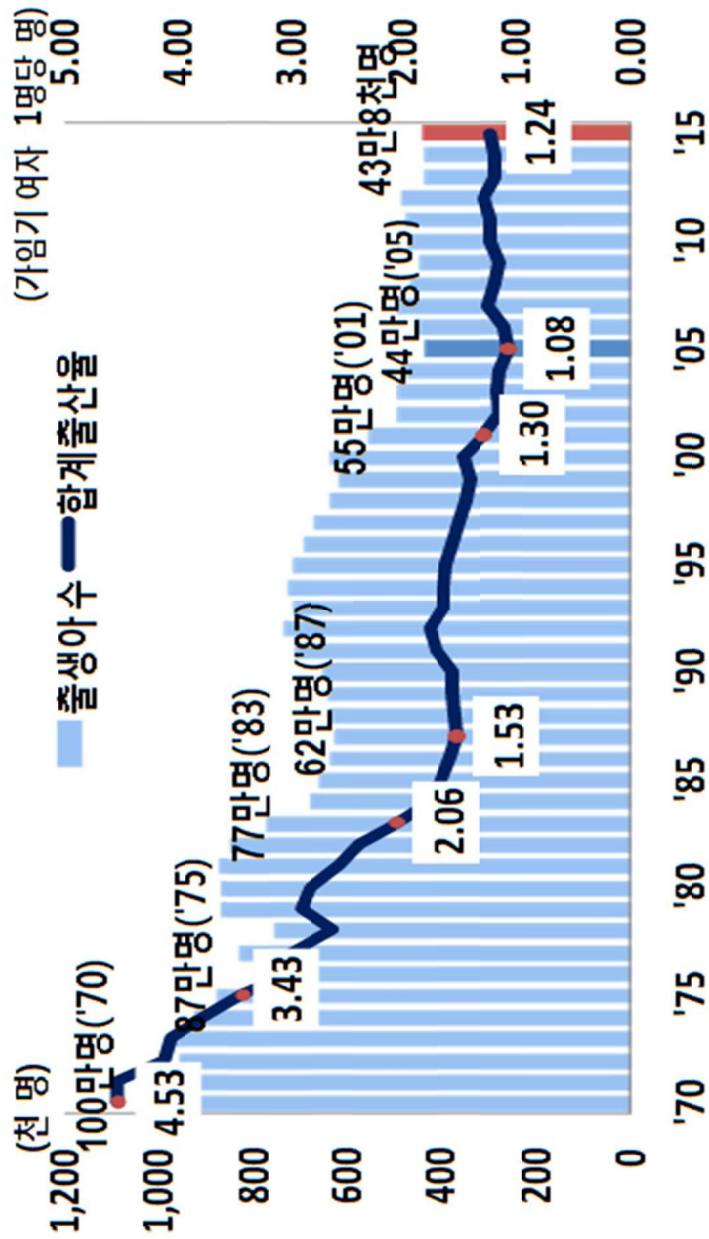
II. 아동복지 환경의 변화

제2장 아동복지 환경변화

8

:: 제 1절 인구구조의 변화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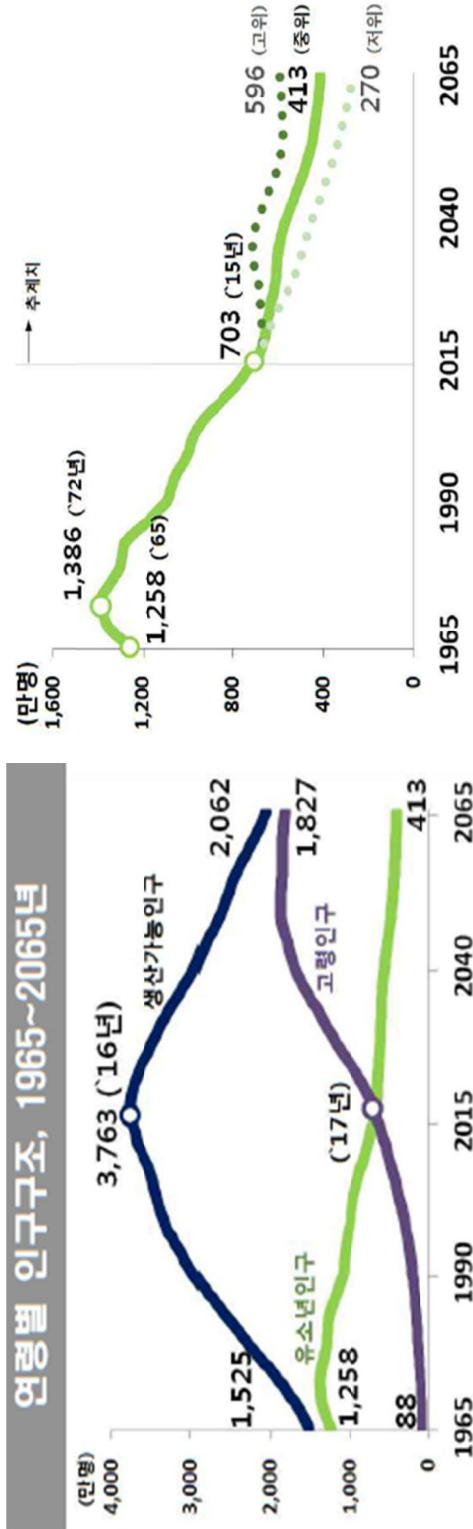


제2장 아동복지 환경변화

9

:: 제 1절 인구구조의 변화

<유소년 인구 추계, 1965-2065년>



- 아동인구의 절대 감소는 요보호 아동의 감소로 나타남
- 미혼모 유기아동의 지속적 발생
- 아동복지 시설의 기능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위기이자 기회

저 출산으로 인한
아동인구 감소

제2장 아동복지 환경변화

10

:: 제 1절 인구구조의 변화

(단위 : 명,%)

연도	요보호 아동 발생현황 (보호유형 계) (A)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아동 (B)	비율(B/A)	보호아동 (C)	비율(C/A)
2006	9,034	4,313	47.7	3,101	34.4
2007	8,861	3,245	36.6	3,378	38.1
2008	9,284	4,964	53.5	2,838	30.6
2009	9,028	4,767	52.8	2,734	30.3
2010	8,590	4,842	56.4	2,124	24.7
2011	7,483	3,752	50.1	2,350	31.4
2012	6,926	3,748	54.1	2,289	33
2013	6,020	3,257	54.1	2,265	32.7
2014	4,994	2,900	58	1,688	33.8
2015	4,503	2,682	59.6	1,582	35.1

자료: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요보호아동의 발생 현황

- 아동복지시설 통해 보호받는 아동은 아동의 4-50%정도가 아동복지시설을 통해 보호받고 있음
- 가정위탁으로 보호받는 아동은 미미한 증가
- 특히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유기영아의 양육시설로의 배치는 지속적으로 증가

제2장 아동복지 환경변화

11

:: 제 1절 인구구조의 변화

(단위 : 명,%)

연도	아동복지 시설 수	생활아동 수	아동양육시설	
			시설수	아동수
2006	282	18,817	243	17,517
2007	282	18,426	243	17,161
2008	285	17,992	242	16,706
2009	280	17,586	239	16,239
2010	280	17,119	238	15,787
2011	280	16,523	242	15,313
2012	281	15,916	243	14,700
2013	281	15,239	243	14,038
2014	278	14,630	243	13,437
2015	281	14,001	243	12,821

자료: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아동복지시설 보호 현황

- 지난 5년 동안 양육시설의 보호 아동은 약 3,000명 감소
- 시설입소아동의 자연적 감소와 가정위탁, 그룹홈 보호 입소비율 증가에 따른 양육시설 생활 아동 수 감소
- 그룹홈 아동의 수가 시설 아동의 수로 계산되는 것은 문제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개소 수	32	60	101	120	276	348	397	416	460	489	480	476	480
아동 수	156	280	540	1,030	1,368	1,664	1,993	2,127	2,241	2,438	2,481	2,588	2,636

제2장 아동복지 환경변화

12

:: 제 1절 인구구조의 변화

전체 아동인구 수 대비 요보호 아동 발생 비율

	2000	2005	2010	2013	2015
18세미만 전체아동수	11,686,350	10,840,848	9,846,794	9,431,699	8,753,064
요보호아동 발생수	15,936	18,468	9,960	6,834	4,975
비율	0.0013	0.0017	0.0010	0.0007	0.0005

아동인구대비 요보호
아동발생비율도 줄고 있음

- 요보호 아동 발생 비율 감소에
따른 양육시설 및 아동보호 체계의
변화가 요구됨

제2장 아동복지 환경변화

13

:: 제 2절 입소아동의 특성 변화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의 특성 변화 : 정서장애아동 비율 증가

- 입소 아동 중 40% 이상이 치료를 요하는 아동들로 보고
(한국아동복지학회, 2011)
- 복합유형의 문제를 가진 아동의 수 증가
- 시설 입소전 다양한 트라우마 경험
(예: 가정폭력, 아동학대, 부모와의 사별, 부모의 실직 및 빈곤에 기인한
가정해체로 인한 만성적인 어려움 등)

- 양육시설은 문제행동 및 트라우마 경험 아동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정서행동장애 아동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한 전문성 확보와 양육
시설의 기능변화가 관건

∴ 제 3절 아동복지법 및 관련 법의 변화에 따른 영향

1. 법 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변화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류 및 종사자 배치 기준의 변화
-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서비스의 확대 :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전담요원의 배치

2. 2016년 개정에 따른 양육시설의 변화

- 사례관리자의 전문성 (보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점검)
- 퇴소 아동의 사후관리
- 아동권리의 강화에 따른 후속 조치(예: 최상의 이익; 부모의 참여 및 아동의 의사존중)
- 즉, 보호계획 수립 및 아동관련 각종 의사결정시 부모의 참여 및 아동의 의사를 묻고 기록으로 남겨야 함

III. 2013 연구결과 요약

: 다기능화에 대한 인식조사

제3장 2013년 연구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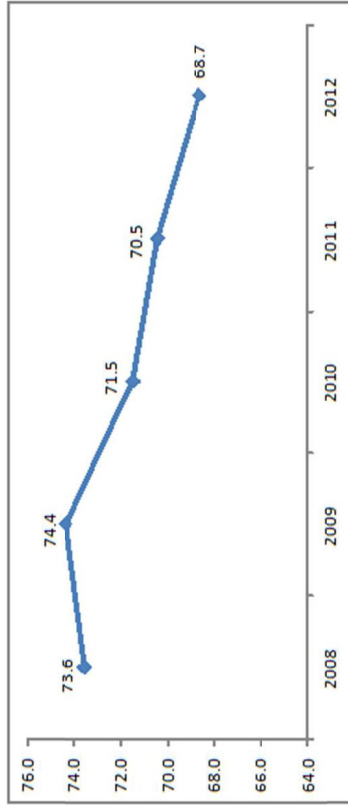
16

연구대상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연구내용	· 지역별 사회 환경 및 욕구조사 · 지역별 아동복지시설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인식조사 · 특성화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연구방법	·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기능개편 관련 시사점 도출 · 역사적 발전과정 중 기능전환과정 집중적 고찰
	· 2012. 11 ~ 2013. 2 실시 · 아동복지협회 등록 시설 143개 시설
	· 대상 : 대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아동복지시설 종사 기관장, 중간관리자 4명 · 아동복지시설 다기능화 현황 및 방안에 대한 의견
	아동복지시설의 다기능화 현황 파악 · 해외 : 일본 아동복지시설인 社會福祉法人 水上隣保館, 미국 Parsons, Andrus, Green Chimney Children's Services Inc. · 국내 : 동명아동복지센터(서울), 푸른마을 아동복지센터(인천), SOS마을(대구)
	· 아동복지 현장 전문가, 교수(학계, 연구자 등) 참여
조사도구	· FGI조사 · 전국 아동복지시설 기본 현황 조사

제3장 2013년 연구결과 요약

17

5년간 아동복지시설의 정원 총원율 변화



- 정원 및 현원 감소가 동시에 발생

아동복지시설 소재지의 아동복지기관 현황

- 아동복지시설이 중소도시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고, 농어촌지역에 가장 적게 설치되어 있음
- 농어촌지역의 경우 요보호아동 발생비율에 비해 아동복지시설이 더 많이 배치되어 있음

조사대상 아동복지시설의 타 시설 설치 현황

- 약 52%의 아동복지시설이 어느 정도의 다기능화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지역사회 욕구에 대응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제3장 2013년 연구결과 요약

18

다기능화 추진 현황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계
없음(무응답 포함)	26(44.8)	41(58.6)	8(53.3)	75(52.4)
자립중심의 시설	2(3.4)	4(5.7)	1(6.7)	7(4.9)
종합아동복지센터	6(10.3)	4(5.7)	1(6.7)	11(7.7)
단기대안학교	2(3.4)	-	-	2(1.4)
그룹홈	4(6.9)	3(4.3)	-	7(4.9)
아동복지관	1(1.7)	1(1.4)	-	2(1.4)
일시보호시설	-	2(2.9)	-	2(1.4)
아동상담과 지역사회서비스	1(1.7)	1(1.4)	-	2(1.4)
어린이집 및 영아시설	2(3.4)	2(2.9)	2(13.3)	6(4.2)
치료시설	5(8.6)	4(5.7)	2(13.3)	11(7.7)
정원축소나 시설축소(시설개보수)	9(15.5)	6(8.6)	-	15(10.5)
타분야 시설로 전환	-	2(2.9)	1(6.7)	3(2.1)
총계	58(1000)	70(100)	15(100)	143(100)

- 대도시의 경우 정원축소, 종합아동복지센터에 대한 응답에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중소도시의 경우 다양한 응답
- 농어촌의 경우 치료시설과 영아 시설로의 전환이 다소 높게 나타남

제3장 2013년 연구결과 요약

19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 대상 : 아동복지시설 시설 장, 사무국장
- 조사내용 : 다기능화 현황, 방향, 다기능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도시지역 아동복지시설	• 일시보호 기능을 포함한 종합아동복지센터로서의 개편이 바람직 • 다수의 시설이 이미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을 함께 운영 중으로 각 지역사회 욕구에 따라 추가기능 부가하여 종합아동복지센터로서 전환
농촌지역 아동복지시설	• 정서행동 문제 치료시설과 대안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전문인력 확보 및 지역사회 반발의 문제 대두 예상 • 장애아동시설로의 전환도 사회적 욕구를 반영하는 현실적 대안
선호하는 아동복지시설 기능전환 방향	• 아동복지시설들은 현재의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룹홈으로 기능전환 선호
아동전문 기관으로의 기능전환	•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가정위탁센터 기능과 기존의 양육시설 기능을 동시에 이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제3장 2013년 연구결과 요약 미국 · 일본 양육시설 다기능화와 시사점

20

미국

아동양육시설에서 다기능화로의 전환	- 고아원으로 시작 → 정서행동 문제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 및 교육 제공. - 그룹 홈, 거주치료센터, 영·유아 보육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외래 치료 서비스 등의 복합서비스 -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및 학교기반서비스
아동과 가족 모두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설중심 서비스 제공 및 부모들의 아동양육 지원을 위한 지역 사회서비스
분리된 예산지원	정서행동 장애 아동을 위해 아동복지국, 정신 보건국, 특수교육부 등의 치료 및 보호 비용 별도 산출 및 지원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시설개방 및 참여,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시설개방화 통해 주민들과의 교류 강화. - 아동이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

제3장 2013년 연구결과 요약 미국 · 일본 양육시설 다기능화와 시사점

21

일본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아동복지시설 설치	아동양호시설에서 시작하여 아동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영아원, 보육원, 유치원, 아동치료시설 등 다양한 아동복지시설 추가 설치
아동심리치료 시설 설치	아동의 정서적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전문적인 치료시설 설치
재택지원 서비스의 다양화와 사회적 책임 제고	- 시설 및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부모들을 지원 -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의 사회적 책임의 방향을 보여줌.

IV. 아동복지 생활시설의 발전방향

제 1절 아동양육시설 개선의 걸림돌

1. 소규모 법인으로서는 갖는 한계
2. 아동복지법 및 관련법의 정비 부족
3. 재정적 한계
4. 변화에 대한 두려움

발전방향 1: 법인의 혁신적인 운영변화 모색

1. 소규모 법인운영의 M & A (합병)를 통한 법인의 변화

- 대규모 법인 대비 소규모 법인의 어려움이 많이 산재
: 기관 및 법인에 대한 불신, 인력채용 및 처우, 지원사업 수주
- 반면 대규모 법인은 아동복지관련 사업보다는 모금 및
배분 사업에 관심이 많고 직접 서비스는 줄여나가는 추세
- 법인규모의 변화는 아동복지사업의 표준화 및 확대용이,
우수 인력채용 및 고용유지, 모금활동 및 지원사업 수주
등에서 유리함
- **현행법상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아동
복지 시설의 정리가 필요함**

발전방향 1: 법인의 혁신적인 운영변화 모색

2. 아동 및 가족 종합복지서비스 기관으로의 전환

- 보호아동에 한정된 서비스에서 아동의 원가정 복귀 및 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복지법인으로 사업 확대 전환
- 아동복지법 52조 2항 및 3항을 최대한 활용
 - 아동복지시설의 통합설치 및 추가사업(상담, 주간보호, 가정지원, **공동생활가정** 등)
- 외국의 치료 및 보호 복합시설 사례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음 (현재 다수의 양육시설은 여러 개의 공동생활 가정 형태를 띠며)
- 요보호아동 및 입양대기 아동의 일시 위탁가정 기능
- 정부의 예산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

발전방향 1: 법인의 혁신적인 운영변화 모색

3. 단순보호 및 양육에서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

- 양육시설에서 장애아동 및 치료 전문 아동가족서비스로 전환
- 치료형 공동생활가정 및 치료시설(RTF)의 운영
- 상담서비스와 같은 이용서비스 확대
- 지역특성에 따라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등의 복합 운영 모색(예: 대도시 이용시설 확대, 중소도시 생활시설 확대 등)
- 장애아동과 요보호아동의 주관 정부부서가 다른 점에 대한 합의점 모색, 관련법 및 지자체 조례의 개정 유도

발전방향 2: 법인 및 시설의 재정구조 변화

1. 중앙정부 지원으로의 전환
2. 지자체 지원 확대 및 지역간 격차 해소
3. 민간지원금 동원의 체계화 (대규모 법인의 투명성은 좋은 선례)
4. 양육시설의 고비용에 대한 오해 불식시키는 노력
 - 비용-편익 및 비용-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5. 시설 현대화에 대한 비용 책임 분담

발전방향 3: 법인 및 시설의 인력 변화

1. 종사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실증적 자료 부족
 - 명료한 업무분장에 따른 아동수 대비 직원수의 적정비율 파악
2. 종사자의 처우 현실화 (중소도시의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해결방안은?)
3.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직결)
 - 단순보호에서 직접 서비스 제공(특히 심리치료 측면)
4. 원장님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함

발전방향 4: 법 정비

1.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법, 특수교육법 등의 관련법에서 종합시설이나 장애 및 특수육구 아동을 보호,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관련법의 정비와 함께 지자체의 조례가 해당지역의 보호 아동 육구 특성 및 법인들의 역할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 & 응답

아동복지 생활시설의 발전방향

이경은 교수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토론문>

- 아동복지 생활시설의 발전방향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경은교수

<요약>

- 아동복지환경이 변화하였고 아동복지시설이 변화되어야 하는 결정적 시기에 왔다는 것은 명확하게 인식
- 증거: 2016년 아동복지법이 개정
2013년 연구결과로 보아 아동복지시설
직원들도 문제 인식과 변화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가능한가? & 지금 우린 어떻게?>

- 실제로 아동복지시설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 발표>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기능화 되어야 한다.
다음의 걸림돌을 극복하고
 1. 소규모 법인으로서는 한계
 2. 아동복지법 및 관련법의 정비 부족
 3. 재정적 한계
 4.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의문>

- 소규모 법인운영의 M & A (합병)를 통한 법인의 변화 가 가능한지...
사회복지 법인의 선택이 없어서 ...
- 2016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많은 부분 변화되어 시설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추가될 법조항? 수정 법조항?
무엇인지

<제안 1>

- 아동복지시설의 지역적 특성이 매우 상이하다.
 - 대도시/중소도시지역/농촌지역 별로
시범사업 운영을 제안합니다.
- 지역의 특성과 시설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원 정도에 따른 고려
아동복지 관련 지역 인프라와 연계

<제안 2>

- 아동복지시설의 다기능화는 인력의 전문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 담당 슈퍼비전 체계와 전문가의 시간근무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 직원의 역량강화
 - 자립이나 양육 사례관리의 전문적 관리훈련 문제나 장애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필요

감사합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른 아동복지 생활시설의 발전방향

김흥기 원장 (경북기독교보육원)

I. 글을 시작하면서

한국의 복지는 아동복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복지가 한국의 복지 모태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아동복지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당면한 과제는 먼저 시대의 변화이다. 시대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동양육시설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적인 현상으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아동 수가 급감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개혁과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낡고 누추한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나친 고집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지 못하여 오히려 그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로 부터 곱지 않는 시선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아동양육시설이 지금의 현실에서 앞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려면 스스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야 하고 또한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여 낡은 사고를 고집하면 스스로 시대 속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동양육시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까 하는 염려는 시설을 경영하는 모든 원장님들의 고민일 것이다. 그 고민을 함께 모아서 지금의 시스템에서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II. 아동양육시설의 발전 방안 대한 소견

1. 아동양육시설 스스로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아동양육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좋은 사례를 가져와도 그것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다. 아동복지법 사업지침 안내 등 시스템은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이것을 아직도 거추장스러운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설립자의 1세대 심지어 2세대까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의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 살을 깎는 아픔을 가지고 개혁을 시도하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2. 외부에서 아동양육시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전력해야 한다.

시설의 이미지를 우리가 개선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시설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아동양육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는 아주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로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이 많다. 지난 3월 27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아동학대대책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만9천669건으로 이중에 80.7%가 부모에 의해서 발생되었고 기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리 양육자에 의한 학대가 11.3%로 발표되었다. 통계적으로 보면 부모에 의한 학대 발생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집이나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사람들이 인지하고 아동복지시설이 마치 인권의 사각지대처럼 알고 있다. 몇몇 시설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학대문제가 마치 전체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인 것 같이 인식을 하는데 외부부터 이런 인식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 전 종사에게 상시로 혹은 주기별로 교육을 해서 집단시설의 폐해로 보는 시선을 돌리는데 전력을 해야 할 것이다.

3.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늦은 감이 있지만 2016년도에는 한국아동복지협회에서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을 부분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전 종사자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한국아동복지협회 내 평생교육원 같은 양성기관을 두어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현재의 아동양육시설을 다기능화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1990년대 이후부터 아동양육시설 다기능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다양한 기능으로 시설을 전환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현재 일부에서는 법인에서 다기능화를 시행하는 곳도 있으나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대다수는 다기능화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지자체 자체에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라 다기능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실정에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안다.

5. 문제행동 및 트라우마 아동청소년, 정서장애행동에 대한 전문 치료시설이 시급하다고 본다.

시설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적게는 1~3명 정도 입소해 있습니다. 이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중복적인 문제행동으로 분노와 충동성인데 이런 아동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보호 시설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지적 3급만으로는 장애시설에 입소할 수 없고 이런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양육시설로 입소가 되는데 정상적인 아동들과 생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아동청소년들이 시설에 머무는 동안 치료받지 못하고 사회로 나갔을 때는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에 머무는 동안 치료되어서 사회 구성원으로 나갈 수 있는 전문 치료시설이 필요하다.

6. 현 아동양육시설을 지역의 모든 아동청소년을 아우르는 종합 아동 센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 (1) 요보호 아동의 수가 급감함에 따른 빈 공간을 활용한 일시보호, 단기보호 주간 보호 시설로 전환하여 위급상황에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이 필요하다.
- (2) 아동양육시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립지원훈련을 지역 내 그룹홈, 조손가정 아동청소년, 친인척 위탁 아동청소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자립지원훈련센터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 (3) 지역 내 치료를 요하는 문제행동을 가진 아동청소년과 트라우마를 가진 아동청소년, 그리고 정서행동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시설로 전환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Ⅲ. 나가면서

아동양육시설은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이 과거의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의 시기인지도 모른다. 기회는 한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과감한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개혁과 혁신에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미루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우리 스스로 개혁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동청소년들을 사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사명감을 다시 한 번 다지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른 새로운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동복지 생활시설의 위기와 기회

한경희 회장 (경기도아동복지협회)

1. 들어가며

최근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특성변화와 함께 아동복지 생활시설의 기능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00년, 2012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을 통하여 아동복지 생활시설의 기능변화를 유도하는 법률적 기반마련 및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아동복지 생활시설의 다기능화 실천은 미흡한 실정이다.

과거 아동복지 생활시설의 입소아동은 대부분이 전쟁으로 인한 고아·미아였지만 오늘날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이혼·빈곤·실직 등으로 인한 가정불화와 가족해체의 증가로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의 문제와 욕구 또한 복잡하고 심각하며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학대·심리사회적 부적응·비행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면서 전문적인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특성변화와 아동권리의 획기적 신장은 아동복지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아동복지 생활시설이 기존의 단순한 보호와 교육 서비스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개입·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사회 아동 및 부모로까지 보편적 아동가족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그 영역을 확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많은 연구들에서 아동복지 생활시설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였지만 일부 시와 시설에서만 시행중이다.

2. 아동복지현장

아동복지현장은 현재 지역거점의 보완적 아동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아동복지 인프라도 미비한 실정이다.

국가적으로 아동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아동복지 생활시설은 정원조정(보호아동의 감소로 인한), 입소아동의 변화(가정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심리·정서적 치료를 요하는 아동의 입소 증가), 조기귀가(부모와 함께 하는 지속적인 시설내 원가족복귀·교류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사례증가로 인한

보호아동 감소,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아동복지 생활시설의 가정과 같은 양육환경 조성 요구,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른 가족기능의 약화 및 아동 양육기능 저하에 따른 보완적·원스탑·지역거점 형태의 아동복지서비스(양육부담감 해소, 아동의 정서적 안정, 학습의욕 고취, 가족기능강화, 인터넷 중독 및 아동 성장·양육에 따른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아동전문심리상담센터, 양육공백을 메우기 위한 단기보호 등) 제공 등에 대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아동복지 생활시설의 인프라를 살펴보자. 경기도의 경우 인적인프라는 2017년 2월말 현재 658명으로, 이중에는 교사·간호사·보육교사·사회복지사·영양사·의사·임상심리사·조리사 등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과 자립전담요원이 상주하며 보호아동들이 사회진출시 성공적인 삶(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인)을 살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시설의 물리적 인프라로는 각 시설별로 강당, 도서실, 상담실 및 심리 검사·치료실, 세탁실, 양호실, 운동장, 프로그램실, 컴퓨터실 등 주거공간 외 활용 가능한 넓은 공간이 다수 있으나 아동의 감소와 더불어 비교적 넓은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방치되어 있다.

아동복지 생활시설의 대부분이 소속사 구조를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주택가에 위치하므로 이용시설로 기능을 강화한다면 지역사회 아동 및 그 가족에게 폭넓은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간호사·보육교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상담사 등 전문인력 확보되어 있어 이 인력을 활용하여 위탁 등 가정지원사업 및 학대아동보호사업 등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추후 시설보호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강화시스템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인적·물적·환경적 유휴자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공간을 지역아동복지센터(서울시 모형)의 거점 등으로 활용한다면 시·군·단위의 가정위탁지원센터·학대아동보호사업·아동복지관·아동 단기 및 일시보호·방과 후 보호·아동가족 상담 및 심리치료·독서실 및 컴퓨터실 개방·체육시설 및 놀이공간 제공·지역사회 주민회의장 등으로 활용한다면 저비용 고효율의 아동가족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3. 아동복지 생활시설 기능의 다양화 추진

기구축된 아동복지시설의 복지인프라(주요 시설, 전문인력, 공간 자원)를 활용한 시설과 인력의 중복투자 예방과 기능강화를 통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한국형 아동복지서비스의 새로운 모형 개발 및 실현이 필요하다.

2016년 미국 아동복지연수, 과거 일본 아동복지연수를 통해 얻은 경험은 아동복지시설 중심의 지역사회 아동가정보호지원 모형이었다. 통합된 시설 내에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아동보호 및 양육부담감 해소, 아동의 정서적 안정 및 학습의욕 고취,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 내 아동의 보호-양육-가족기능강화-사례관리 등으로 이어진 다양한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가족 one-Stop-Service 체계이었다.

우선 아동복지 생활시설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은 성공적으로 기실시되고 있는 학대아동 보호사업, 아동가정지원사업(위탁 등), 전문상담사업 등이 있으며, 기시설에서 확보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인력을 활용한다면 저비용 고효율의 아동복지시설 다기능화가 실현가능하며 이는 행정기관의 여건조성과 기준(조례제정) 마련으로 현재의 양육시설에 그 기능을 추가로 부여한다면 한국 아동복지시설 발전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사료될 것이나 이를 위한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더불어 2012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과 더불어 사라진 아동복지시설 유형(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복지관 등) 중에는 학계와 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지가 결정된 아동복지관이 있다. 일반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관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었으나, 2011년 당시 극히 소수의 시설만이 운영되었던 것은 소극적인 예산지원 등으로 발생하였다고 사료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제공하는 잔여적 서비스와 더불어 일반아동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법률적 기반마련 등 보완이 필요하다.

4. 마치며

현재 아동복지 생활시설은 외형상 분명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변화에의 두려움을 떨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과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시설변화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한다면 강산이 한 번 더 변하기 전에 분명히 선구자적 위치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하다.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간 경기도 차원의 다기능화 노력으로 2005년 경기도아동복지협회는 내부조사를 거쳐 2005년 · 2006년 · 2007년에 걸쳐 경기도에 경기도아동복지시설 다기능화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2007년 경기개발연구원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다각화 모델구축연구」 등에서 실태조사를 통하여 경기도의 독자적인 특성을 반영한 아동복지 생활시설의 다기능화 모델을 제안하였으나 이후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없이 법인과 시설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받았다.

아동복지 생활시설의 다기능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의 실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과 시설은 소재지와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모델 구축노력, 학계는 조사결과 및 해외성공모델을 참고한 구체적인 한국형 아동복지 생활시설의 다기능화 모형의 제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기능화에 필요한 적극적인 제도정비와 정책마련과 조례제정 및 예산확보 등의 삼박자가 맞아야 아동생활시설의 다기능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모든 것에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은 아동복지 서비스의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향상이며, 현재 가장 마지막 보호단계인 아동복지 생활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 최우선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외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 경기도아동복지협회 운영기관

- 자립지원사업(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 자립지원사업(경기아동자립생활관 운영, 5층 다세대 주택, 원룸 27세대)
- 자립지원사업(경기아동자립체험관 운영, 남1 · 여1)
- 전문상담사업(경기도아동상담소 운영)
- 전문상담사업(아동전문심리치료센터 운영)

MEMO

MEMO

MEMO

MEMO